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년 4월 20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4월 5일

나. 제출자: 김동협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라. 상정일자: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4.20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김동협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및 청년들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청년의 대상 범위 명시(안 제2조)
- 2)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시행계획 수립으로 개정
(안 제5조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안 제7조)
- 3) 기존의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편 (안 제8조제4항, 제9조, 제10조제1항)
- 4) 청년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신설과 청년활동 지원 방안의 구체화 (안 제12조제3항, 제4항)
- 5) 청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한 규정 신설
(안 제19조제1항, 제2항, 제3항)
- 6) 각종 청년지원사업 및 시설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통합 신설 (안 제2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, 제5항
-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, 제8조, 제13조, 제14조
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등

다. 해당부서: 일자리정책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1. 4. 5. ~ 4. 10.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서선옥)

-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- 우리구에서는 지난 2017년 6월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·구 협력사업으로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,
-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각종 청년지원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·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에서 “청년”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,

개별조항 검토 (안 제2조)

- 「청년기본법」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별 법령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와 같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,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 단서조항에서도 “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바,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- 안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한 것을 「청년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,

개별조항 검토 (안 제5조)

- 「청년기본법」 제8조에서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 제9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등이 수립·시행하도록 한 바,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안 제8조와 제9조, 제10조는 기존의 상설로 운영되던 청년정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·해촉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의 회의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신설과 청년활동 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였음.

개별조항 검토 (안 제12조)

- 「청년기본법」 제17조에서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3조제1항에서는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12조 (청년의 고용확대 등)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수립(제1항),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 강구(제2항)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, 구직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.

- 안 제19조는 제목을 기존의 “청년의 체육활동 강화”에서 “청년의 건강증진”으로 개정하고 청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더욱 구체화 하였으며,
 - 안 제23조에 업무의 위탁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청년시설 운영 및 안 제12조의 청년활동 지원, 제19조의 건강 보호·증진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시·구 협력사업으로

-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,
- 이에 우리구 청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고,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 활동 지원과 건강 보호·증진의 방안을 보다 구체화 하는 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새로운 지원항목을 신설함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마련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향후 지속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,
- 청년정책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청년의견의 정책반영 및 회의 시마다 새로 구성해야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1) 시구협력사업 지원분야 1부.

2) 관계법령 1부.

참 고

시-구협력사업 지원분야

□ 강서구비 지원사업: 91억 2,650만원

-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77.325억원/ 중소기업육성기금 13.94억원

소상공인 지원 [22.94억원]	① 폐업 소상공인 지원 (구비 100%)	9억원 [1,920개]
	▪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·제한 소상공인, 업체당 50만원	9억 원
취약계층 지원 [61.1억원]	②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(구비 100%)	13.94억원 [1,000명]
	▪ 1,000명에게 무이자로 2천만원까지 지원	13.94억 원
피해업종 지원 [4.475억원]	③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(시비 80%, 구비 20%)	7.3억원 [34,681명]
	▪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에게 1인당 10만원	7.3억 원
자율지원 [2.75억원]	④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(구비 100%)	53.8억원 [10,665명]
	▪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인당 50만원	53.8억 원
피해업종 지원 [4.475억원]	⑤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(구비 100%)	5천250만원 [1,036개]
	▪ 선제검사 의무대상 시설 1,036개, 시설당 50~100만원	5천250만원
피해업종 지원 [4.475억원]	⑥ 어린이집 지원 (구비 100%)	3.35억원 [335개]
	▪ 구 소재 어린이집 335개소, 시설당 100만원 지원	3.35억 원
피해업종 지원 [4.475억원]	⑦ 지역아동센터 지원 (구비 100%)	2천만원 [20개]
	▪ 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20개, 시설당 100만원 지원	2천만원
피해업종 지원 [4.475억원]	⑧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(구비 100%)	4천만원 [4개]
	▪ 마을버스 업체 4개, 업체당 1천만원 지원	4천만원
자율지원 [2.75억원]	⑨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(구비 100%)	2.75억원 [550개]
	▪ 종교시설 550개소(추정), 개소당 50만원상당 방역물품 지원	2.75억 원

□ 서울시비 지원사업: 123억 6000만원+ α

소상공인 지원 [101.5억원]	⑩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(시비 100%) 101.5억원 [14,025개]	
	·집합금지 업종(연장) 1,377개, 업체당 150만원	30.5억 원
	·집합금지 업종(완화) 816개, 업체당 120만원	
	·집합제한 업종 11,832개, 업체당 60만원	70.9억 원
피해업종 지원 [221억원+α]		
⑪ 운수종사자 지원 (시비 100%) 17.4억원 [3,481명]		
·법인택시·마을버스·전세버스·공항버스 기사 1인당 50만원		17.4억 원
⑫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(시비 100%) 5.04억원 [1,540명]		
·가구소득 중위 120% 이하 예술인, 1인당 100만원 지원 - 우리구 거주 예술인활동증명서 보유자 1,540명		5.04억 원
⑬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(시비 100%) 별도추계[α]		
·관광·MICE 소상공인 5천개사, 업체당 2백만원 지원 - 우리 구 관광사업체 518개 중 소상공인 업체 신청 지원		

※ 서울시 지원 계획에 의해 소관 부서별 집행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(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제39조제1항(제46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8. 6., 2017. 1. 17.>

1. 자연재난

2.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·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

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, 2017. 1. 17., 2020. 8. 18.>

1.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
2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4. 자금의 융자, 보증, 상환기한의 연기,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
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7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8.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
9.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. 17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

청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. 17.>

-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·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<신설 2017. 1. 17.>

□ 「청년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·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·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제8조(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청년정책의 기본방향
2. 청년정책의 추진목표
3.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
4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· 평가
5.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
6.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

7.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기본계획에는 고용·교육·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

3.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
4. 청년정책의 분석·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

5.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6.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통일부장관·법무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농림축산식품부장

관 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 · 보건복지부장관 · 고용노동부장관 · 여성가족부장관 · 국토교통부장관 · 중소벤처기업부장관 · 금융위원회위원장 ·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
2.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
3.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 ·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,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· 실무위원회 ·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사무국의 조직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시 ·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기업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“기업등”이라 한다)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(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0. 9.]